

춘천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가단556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나5398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가단55636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동건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변론 종결 2018. 8. 29.

판결 선고 2018. 9.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C'은 D'의 오기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6. 3. 22. 접수 제1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 E가 2007. 11. 22. 이 사건 건물을 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7. 12. 1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강원 화천군 F 전 9,068㎡는 2005. 9. 26.경 F 전 3,306㎡, G 전 2,809㎡, H 전 2,953㎡로 분할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H 전 2,953㎡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H 전 2,95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와 E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558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 및 원고의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E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 2015. 9. 17.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그 직후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고 차임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던 피고는 2016. 3. 21.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3. 2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물건이 있어 피고는 2016. 5. 11.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2268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19.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그 직후 확정됨), 이에 근거해 강제집행(춘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2016본822호)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인데,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여건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자, 명의수탁자인 E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E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대지 부분을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한 자이므로 피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거니와,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피고의 선의 여부를 불분하고 소유권취득은 유효하다.

원고가 그저 피고를 괴롭혀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 E가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의 증여계약이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E의 처분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에게 현재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과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도 아니어서 굳이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정성균

별지